

정정신고(보고)

2023년 2월 16일

1. 정정대상 공시서류 : 일괄신고서
삼성통일코리아증권자투자신탁 제1호 [주식]

2.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: 2009. 04. 17

3. 정정 내용

- 정기 결산으로 인한 개신(표준편차 변동, 재무정보 확정)
-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및 문구 명확화
-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추가(소규모 관련)
- 법개정사항 반영

4. 정정사항

항 목	정정전	정정후
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	(추가)	11.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 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(소규모펀드)인 경 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 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, 투자 시 소규 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, 판매회사, 자산운용 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요약정보		
투자비용	-	업데이트
투자실적 추이	-	업데이트
운용전문인 력	-	업데이트
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
5. 운용전 문인력	-	업데이트
10. 집합투 자기구의 투자위험	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<위험등급 기준표(연환산 표준편차 기준)> 주2) 이 투자신탁의 위험등급 적용을 위해 산출한	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<위험등급 기준표(연환산 표준편차 기준)> 주2) 이 투자신탁의 위험등급 적용을 위해 산출한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																
	실제 연환산 표준편차는 20.67% 입니다.	실제 연환산 표준편차는 21.32% 입니다.																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	–	업데이트																
14. 이의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	<p>나. 과세 (2) 수익자에 대한 과세 – 원천징수 원칙 1)~2) (생 락) 3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[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사항]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<th>주요 내용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납입 요건</td><td> 가입기간 5년 이상, 연 1,800만원 한도 (퇴직연금,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) (추 가) </td></tr> <tr> <td>세액 공제</td><td> (추 가)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2%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종합소득 4천만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,500만원 이하)는 납입액 4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5% · 종합소득 1억원 초과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1억 2,000만원 초과)는 납입액 3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2% 단,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는 2014년 1월 1일 이후 납입액부터 적용 (추 가) 단,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는 2014년 1월 1일 이후 납입액부터 적용 </td></tr> <tr> <td>연금수령 시 과세</td><td> 연금소득세 5.5~3.3%(나이에 따라 변경, 종합과세 가능) 단, 이연퇴직소득은 '이연퇴직소득세액 X 70%' 적용 </td>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주요 내용	납입 요건	가입기간 5년 이상, 연 1,800만원 한도 (퇴직연금,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) (추 가)	세액 공제	(추 가)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2%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종합소득 4천만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,500만원 이하)는 납입액 4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5% · 종합소득 1억원 초과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1억 2,000만원 초과)는 납입액 3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2% 단,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는 2014년 1월 1일 이후 납입액부터 적용 (추 가) 단,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는 2014년 1월 1일 이후 납입액부터 적용	연금수령 시 과세	연금소득세 5.5~3.3%(나이에 따라 변경, 종합과세 가능) 단, 이연퇴직소득은 '이연퇴직소득세액 X 70%' 적용	<p>나. 과세 (2) 수익자에 대한 과세 – 원천징수 원칙 1)~2) (현행과 같음) 3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[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사항]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<th>주요 내용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납입 요건</td><td> 가입기간 5년 이상 (삭 제)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 이내(퇴직연금,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)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연간 1,800만원 2.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91조의 18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(이하 “전환금액”이라 한다.) </td></tr> <tr> <td>세액 공제</td><td>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 이내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3.2%(지방소득세 포함) · 종합소득 4,500만원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,500만원 이하)는 납입액 600만원 이내 세액공제16.5% (지방소득세 포함) (삭 제) 2.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전환 금액이 있는 경우 전환 금액의 10% 또는 300만원(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) 중 적은 금액 단,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액부터 적용 </td></tr> <tr> <td>연금수령 시 과세</td><td> 연금소득세 5.5~3.3%(나이에 따라 변경, 종합과세 가능) 단,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에 대해 아래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 적용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 이하인 경우: 연금외수령 원천징 </td>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주요 내용	납입 요건	가입기간 5년 이상 (삭 제)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 이내(퇴직연금,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)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연간 1,800만원 2.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91조의 18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(이하 “전환금액”이라 한다.) 	세액 공제	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 이내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3.2%(지방소득세 포함) · 종합소득 4,500만원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,500만원 이하)는 납입액 600만원 이내 세액공제16.5% (지방소득세 포함) (삭 제) 2.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전환 금액이 있는 경우 전환 금액의 10% 또는 300만원(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) 중 적은 금액 단,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액부터 적용 	연금수령 시 과세	연금소득세 5.5~3.3%(나이에 따라 변경, 종합과세 가능) 단,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에 대해 아래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 적용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 이하인 경우: 연금외수령 원천징
구분	주요 내용																	
납입 요건	가입기간 5년 이상, 연 1,800만원 한도 (퇴직연금,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) (추 가)																	
세액 공제	(추 가)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2%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종합소득 4천만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,500만원 이하)는 납입액 4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5% · 종합소득 1억원 초과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1억 2,000만원 초과)는 납입액 3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2% 단,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는 2014년 1월 1일 이후 납입액부터 적용 (추 가) 단,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는 2014년 1월 1일 이후 납입액부터 적용																	
연금수령 시 과세	연금소득세 5.5~3.3%(나이에 따라 변경, 종합과세 가능) 단, 이연퇴직소득은 '이연퇴직소득세액 X 70%' 적용																	
구분	주요 내용																	
납입 요건	가입기간 5년 이상 (삭 제)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 이내(퇴직연금,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)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연간 1,800만원 2.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91조의 18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(이하 “전환금액”이라 한다.) 																	
세액 공제	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 이내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3.2%(지방소득세 포함) · 종합소득 4,500만원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,500만원 이하)는 납입액 600만원 이내 세액공제16.5% (지방소득세 포함) (삭 제) 2.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전환 금액이 있는 경우 전환 금액의 10% 또는 300만원(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) 중 적은 금액 단,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액부터 적용 																	
연금수령 시 과세	연금소득세 5.5~3.3%(나이에 따라 변경, 종합과세 가능) 단,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에 대해 아래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 적용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 이하인 경우: 연금외수령 원천징 																	

항 목	정 정 전		정 정 후	
			<p>수세율의 70%</p> <p>2.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을 초과하는 경우: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60%</p>	
분리과세 한도	연간 1,200만원(공적연금소득 제외, 퇴직소득 제외)		<p>연금소득 분리과세</p> <p>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연금소득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퇴직 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2. 의료 목적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연금소득 3. 1호 및 2호 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,2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 <p>단, 연 1,2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또는 15% 분리과세 선택 가능 (2023년 1월1일 이후 연금 수령 분부터 적용)</p>	
부득이한 연금외 수 령 사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천재지변 - 가입자의 사망, 해외이주,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-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- 금융기관의 영업정지, 인·허가 취소, 해산결의, 파산선고 		<p>부득이한 연금외 수 령 사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천재지변 - 가입자의 사망, 해외이주 -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·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 요양 필요 시 - 가입자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6조제1항제2호의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- 가입자가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- 금융기관의 영업정지, 인·허가 취소, 해산결의, 파산선고 	
	<p>※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>4) 퇴직연금제도의 세제</p> <p>① 세액공제: 근로자의 추가부담금은 연금저축과 합산(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+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최대 400만원 이내의 금액)하여 연간 700만원 한도까지 12%(또는 15%) 세액 공제 (추 가)</p> <p>※ 상기 기재된 세율 및 과세관련 사항 등은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. (추 가)</p>		<p>(삭 제)</p> <p>4) 퇴직연금제도의 세제</p> <p>① 세액공제: 근로자의 추가부담금은 연금저축과 합산(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+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최대 600만원 이내의 금액)하여 연간 900만원 한도까지 13.2%(또는 16.5% 지방소득세 포함) 세액공제 단, 퇴직연금계좌 세액공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 분 기준 한도로 작성되었습니다</p> <p>※ 상기 기재된 세율 및 과세관련 사항 등은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. ※ 연금 세제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(https://100lifeplan.fss.or.kr)의 '연금세제안내'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	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제3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	
1. 재무정보 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	-	업데이트
제4부. 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		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	라. 운용자산 규모 -	라. 운용자산 규모 업데이트
3.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가. 신탁회사 (3)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1) 의무 (3)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· 투자설명서가 법령· 신탁계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/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/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/ 운용지시 시 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/ 투자신탁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결과 / (추가)	가. 신탁회사 (3)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1) 의무 (3)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· 투자설명서가 법령· 신탁계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/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/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/ 운용지시 시 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/ 투자신탁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결과 / 그 밖에 법제247조제5항에서 열거하는 사항